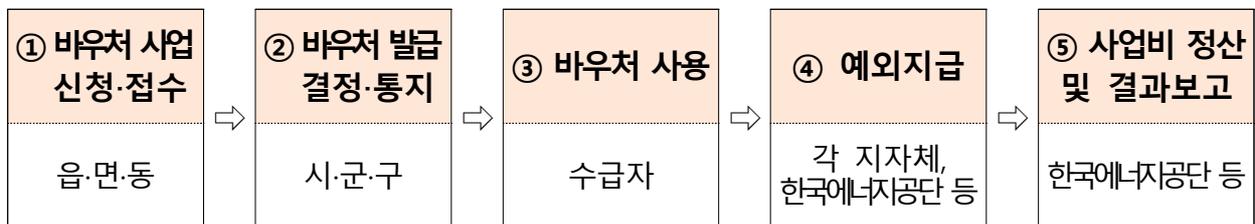


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

- (추진근거) 에너지법 제16조의2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), 제16조의3(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) 등
- (사업내용)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·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 연탄)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

<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절차 >



- (예산규모) 332,187백만원
- (지원대상)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 - (소득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- (세대원특성)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

- ▶ (노인)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. 이전 출생자
- ▶ (영유아) 주민등록기준 2017. 1. 1. 이후 출생자
- ▶ (장애인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▶ (임산부)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▶ (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)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 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- ▶ (한부모가족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▶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※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

- ▶ (지원제외)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(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)
- ▶ (중복지원 불가)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'24.10월~)를 지원받은 자(세대)
 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'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(세대)
 -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'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세대)

□ (신청기간) 2024. 5. 29.(수) ~ 2024. 12. 31.(화)

* 신청 중단기간(실물카드 포인트 생성기간) : 2024. 6. 27. ~ 2024. 6. 28., 2024. 10. 1. ~ 2024. 10. 3.

□ (신청방법)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혹은
 ②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

□ (정보변경 가능기간) 2024. 5. 29.(수) ~ 2025. 5. 25.(일)

○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결정된 수급자는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 가능

변경 가능 정보	변경 가능 기간
▶ 세대원 감소,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(해제)	'24. 5. 29. ~ '24. 6. 26.
▶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	'24. 5. 29. ~ '24. 9. 30.
▶ 이용권(가상↔실물), 주소, 주거형태, 고객센터, 에너지원, 공급자, 수급자, 연락처, 세대원 증가, 하절기 요금미차감	'24. 5. 29. ~ '25. 5. 25.

* 재신청 중단기간(실물카드 포인트 생성기간) : 2024. 6. 27. ~ 2024. 6. 28., 2024. 10. 1. ~ 2024. 10. 3.

□ (사용기간) 2024. 7. 1.(월) ~ 2025. 5. 25.(일)

※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2023년 대비 약 1개월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

- ▶ (하절기) '24. 7. 1. ~ '24. 9. 30. / (동절기) '24. 10. 1. ~ '25. 5. 25.
- (동절기 가상카드) '24. 10. 1. ~ '25. 5. 25. / (실물카드) '24. 10. 4. ~ '25. 5. 25.
- 가상카드는 '24. 7. 1. ~ '24. 9. 30.(하절기)까지, '24. 10. 1. ~ '25. 5. 25.(동절기)까지 발행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요금 차감 실시

□ (지원금액)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여

구 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
하절기	40,700원	58,800원	75,800원	102,000원
동절기	254,500원	348,700원	456,900원	599,300원
합 계	295,200원	407,500원	532,700원	701,300원

*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(21년부터 외국인 포함)으로 산정

- (하절기 당겨쓰기) 희망 세대에 한해 동절기바우처 금액 일부(최대 4.5만원)를 하절기로 당겨쓰기 가능

▶ (신청) '24. 9. 30.(하절기 사용기간 내)까지 신청

* 타동절기 이용권(연탄쿠폰, 등유바우처)을 신청(예정)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

▶ (미신청) '24. 6. 26.(하절기 사용기간 전)까지 변경 신청

- (동절기 이월) 하절기바우처 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

- (하절기 미차감) 올해부터는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바우처 금액 전액을 별도 차감없이 동절기에 배정하여 사용 가능

□ (지원방법)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, 지정(신청)한 지원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

- 하절기 : 가상카드(요금차감)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

- 동절기 : 실물카드,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

▶ (실물카드) 카드를 발급받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
(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)

▶ (가상카드)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 자동 차감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中 택일)

□ (예외지급) 에너지바우처 신청, 발급,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사용 종료(2025. 5. 25.) 이후 냉·난방 비용을 환급

- (유의사항) 1인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 기간에 수급자와 세대를 달리한 자(유족 등)에게 예외지급 불가